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명칭 변경〉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56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권향엽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23.
3. 회 부 일 : 2026. 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산하조직에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를 열거함.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4. 12. 새마을운동중앙회에 그 산하조직의 명칭을 성 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부녀(婦女)’는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남성을 기준으로 아내와 딸을 지칭하는 용어임.

이에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의 명칭을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변경하여 성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 여성조직의 명칭을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에서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변경하여, 법률에 사용되는 “부녀”라는 용어를 성평등 관점에서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다시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 제2조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 및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새마을운동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음.¹⁾ 이에 따라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는 법률에서 직접 규

정된 새마을운동조직의 하나로서 전국 새마을부녀회 조직의 상위단체로 기능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과 감독의 대상이 되고 있음.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21년 발간한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에서 “부녀”를 전통적·권위적 성역할을 전제로 하는 차별 언어 유형으로 분류하고, 법령상 이를 “여성”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개선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²⁾

이러한 문제의식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칙 구조와도 일정 부분 맞아 있음. 즉,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계통 회칙은 읍·면·동협의회 회원을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계통 회칙은 각급 조직을 “여성으로서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규정하고, 리·통새마을부녀회 회원 자격을 “관내 리·통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여성”으로 명시하고 있음.

1)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2) 한국법제연구원은 “부녀자”의 사전적 의미가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을 지칭하는 표현임에도 이를 다른 개념과 구별하여 정의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특히 법령에서는 ‘성숙’이라는 불확정·불명확한 용어로 인해 대상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차별 용어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부녀자’와 ‘부녀’의 개념은 위안부 강제동원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 필요성이 크지 않고, 이 경우에도 ‘여성’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여성’으로의 순화를 제시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등장하는 ‘부녀자’ 용어는 삭제하고 적절한 대체 용어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21-04,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 강현철, 2021.6.7., p.65-68).

이처럼 회칙상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조직에 소속되는 이원적 구조가 제도화되어 있는바, 이는 단순한 명칭상의 차이를 넘어 회원자격과 조직 편제에서 성별에 따른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구조를 문제시하여, 2022년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대하여 성별에 따라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단체명을 성평등한 용어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³⁾

인권위는 특히 관련 회칙상 새마을지도자의 회원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여 여성은 새마을지도자가 될 수 없는 구조가 “지도자는 남성이 적합하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유지·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하였고, 봉사활동의 성격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별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단체명 역시 “부녀회”보다는 성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음.

이와 같이 법제연구기관 및 인권기구에서 “부녀” 용어와 성별 분리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음에도, 새마을운동조직의 중앙여성조직 명칭은 여전히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로 남아 있어, 성평등 정책 및 공공부문 용어 정비 흐름과의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⁴⁾

3)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운동중앙회의 성별을 이유로 한 회원가입 제한에 대한 의견 표명-성별에 따른 회원가입 제한을 지양하고, 단체명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정해야”, 2022.06.07.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8009>

4)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 권고 이어 법안까지...’부녀’ 표현 퇴출 수순 ‘왜?’”, 2026. 2. 24.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이 법률상 명칭을 “여성회”로 전환하려는 것은 차별 논란이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방향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으며, 나아가 공공부문 법률용어를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정하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호명의 방식을 보다 현대적으로 개선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새마을부녀회”라는 명칭을 약 50년간 사용해 오면서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해 왔다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강조하며, “부녀”에서 “여성”으로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 법률 개정 앞서 유관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기존 정관을 전제로 그 개정·재인가 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이 법 시행 전에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은”이라는 표현은 이미 유효한 기존 정관을 장황하게 반복하는 측면이 있어 보임.

경과조치의 취지가 법 시행에 따른 조직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 새로운 규정에 맞추어 정관을 정비할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인가받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정관은 이 법에 따른 정관으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맞게 개정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방식으로 보다 명료하게 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여성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인권위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새마을운동 산하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명칭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⁵⁾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38

5)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최근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에서 ‘새마을지도자중앙부녀회’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26. 2.26.) 하여 행정안전부에 승인 요청을 하였으며, ‘새마을여성회’로의 명칭 변경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행정안전부에 제시한 바 있음.